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5.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18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8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9. 3.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장종연)

가. 제안이유

- 어린이집 등에 건강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수요자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칭: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 위 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내(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 향후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건립 시 이전

- 규 모: 148 m^2 (저온창고)
- 공간구성: 입출하장, 피킹장, 위생전실, 검품실, 파레트·롤테이너 보관실 등
(운영사무실 별도)
- 운영인력: 8명 (센터장 1명, 경영관리 2명, 교육홍보·도농체험 1명, 식재료
물류배송 4명)

○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3년 이내
- 위탁사무
 -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
 - ▶ 참여대상: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 ▶ 대상품목: 농·축·수산물, 산지 기초지자체에서 조달 가능한 가공식품 등
 -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운영
 -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인재)

-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건강한 식재료를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설치 예정인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민간위탁으로 운영 예정인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는 강서구 외 발산동 427-1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 친환경유통센터 내 약 148 m^2 (45평, 사무실 별도) 규모로 설치 및 냉장·냉동 창고, 검수시설, 물류집배송장 시설

을 갖추고 센터장 1명, 직원 3명, 물류배송 4명 총 8명의 인력으로 운영 예정. 공공급식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중요 역할로서 식재료 보급 대상은 총 278개소로써 어린이집 255개소, 지역아동센터 18개소, 복지시설 5개소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배송하고 공공급식 및 먹거리 관련 교육·홍보와 도농 교류·체험 사업, 그 밖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총 5억 7천만원이며 센터 임대료, 사무직 인건비, 운영비 등 3억 6천만원은 구비와 시비가 50:50 매칭이고 나머지 배송비, 안전성 검사비 등 2억 1천만원은 전액 시비

- 서울시에서는 2010년 3월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농촌 현지 지자체와 자치구 간 1:1 매칭을 통해 직거래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7년 시범운영에 서울시 자치구 6개구가 참여하였고 '18년에는 4개구가 참여하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자 추진 계획에 있으며,
-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은 수요자 요구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식재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물류 배송 등 식재료의 안전과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이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이 대행함으로써 우리구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민간위탁 근거 및 참가자 기준에 대하여도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현재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서 구매하던 식재료 공급방식의 변경으로 인

한 장,단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보류 되어 기간의 경과 및 회계연도의 변경에 따라 안건의 내용 중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과 소요예산안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 54 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 2019. 3. 4.

제안자 : 이규선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보류 되어 제출된 이후 기간의 경과 및 회계연도의 변경에 따라 안건의 내용 중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과 소요 예산안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2. 수정내용

- “제3호 민간위탁 추진 일정 및 향후계획” 내용 중 “2019년 1월, 일상감사 의뢰”를 “2019년 3월, 일상감사 의뢰”로 하고, “2019년 1월,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를 “2019년 4월,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로 하고,
“2019년 2월,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2019년 5월,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로 하고, “2019년 2월,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를 “2019년 6월,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로 하고,
- 제4호 민간위탁 소요 예산안(2019년) 중 “5억7천 5십6만원”을 “3억2천 4백2십8만 5천원, (4.5개월)”로 하고,
- 제4호 하단 표 내용 중 “시비, 소계, 3억8천 7백8십4만4천 4백6십6원”을 “2억1천 3백3십9만 2천4백6원”으로 하고, “시비, 임대료, 2천5백만원”을 “1천1백2십5만원”으로 하고, “시비, 사무직인건비, 8천2백8십5만 9천6백5

- 십5원”을 “4천7십5만 1천8백4십1원”으로 하고, “시비, 운영비, 7천4백8십5만5천원”을 “5천8백8십9만 1천2백5십원”으로 하고,
- “시비, 배송비, 1억4천 5백9십9만 8백1십1원”을“7천1백8십만 8백6십5원”으로 하고, “시비, 안전성 검사비 등, 5천9백1십3만 9천원”을 3천6십9만 8천4백5십원”으로 하고, “구비, 소계, 1억8천 2백7십1만 4천6백5십5원”을 “1억1천 8십9만 3천9십1원”으로 하고, “구비, 임대료, 2천5백만원”을 “1천1백2십5만원”으로 하고, “구비, 사무직 인건비, 8천2백8십5만 9천6백5십5원”을 “4천7십5만 1천8백4십1원”으로 하고, “구비, 운영비, 7천4백8십5만 5천원”을 “5천8백8십9만 1천2백5십원”으로 하고,
- 제5호 하단 표 내용 중 “18년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현황”을 “19년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현황”으로 한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3호 민간위탁 추진 일정 및 향후계획” 내용 중 “2019년 1월, 일상감사 의뢰”를 “2019년 3월, 일상감사 의뢰”로 하고, “2019년 1월,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를 “2019년 4월,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로 하고,
“2019년 2월,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2019년 5월,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로 하고, “2019년 2월,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를 “2019년 6월,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로 하고,
- 제4호 민간위탁 소요 예산안(2019년) 중 “5억7천5십6만원”을 “3억2천4백2십8만 5천원, (4.5개월)”로 하고,
- 제4호 하단 표 내용 중 “시비, 소계, 3억8천7백8십4만4천 4백6십6원”을 “2억1천 3백3십9만 2천4백6원”으로 하고, “시비, 임대료, 2천5백만원”을 “1천1백2십5만원”으로 하고, “시비, 사무직인건비, 8천2백8십5만9천6백5십5원”을 “4천7십5만1천8백4십1원”으로 하고, “시비, 운영비, 7천4백8십5만5천원”을 “5천8백8십9만 1천2백5십원”으로 하고,
“시비, 배송비, 1억4천5백9십9만8백1십1원”을 “7천1백8십만8백6십5원”으로 하고, “시비, 안전성 검사비 등, 5천9백1십3만9천원”을 3천6십9만8천4백5십원“으로 하고, “구비, 소계, 1억8천2백7십1만4천6백5십5원”을 “1억1천8십9만3천9십1원”으로 하고, “구비, 임대료, 2천5백만원”을 “1천1백2십5만원”으로 하고, “구비, 사무직 인건비, 8천2백8십5만9천6백5십5원”을 “4천7십5만1천8백4십1원”으로 하고, “구비, 운영비, 7천4백8십5만5천원”을 “5천8백8십9만1천2백5십원”으로 하고,

- 제5호 하단 표 내용 중 “18년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현황”을 “19년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현황”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3. 민간위탁 추진 일정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9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18. 10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18. 11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2018. 11월: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 ○ 2019. 1월: 일상감사 의뢰 ○ 2019. 1월: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 ○ 2019. 2월: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2월: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 <p>4. 민간위탁 소요 예산안(2019년): 570,560천원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분야</th> <th>소 계</th> <th>임대료</th> <th>사무직 인건비</th> <th>운영비</th> <th>배송비</th> <th>안전성 검사비 등</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시비</td> <td>387,844,466</td> <td>25,000,000</td> <td>82,859,655</td> <td>74,855,000</td> <td>145,990,811</td> <td>59,139,000</td> <td></td> </tr> <tr> <td>구비</td> <td>182,714,655</td> <td>25,000,000</td> <td>82,859,655</td> <td>74,855,00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5.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제고 ○ 수요자 요구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 	분야	소 계	임대료	사무직 인건비	운영비	배송비	안전성 검사비 등	비 고	시비	387,844,466	25,000,000	82,859,655	74,855,000	145,990,811	59,139,000		구비	182,714,655	25,000,000	82,859,655	74,855,000				<p>3. 민간위탁 추진 일정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9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18. 10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18. 11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2018. 11월: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보류) ○ 2019. 3월: 일상감사 의뢰 ○ 2019. 4월: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 ○ 2019. 5월: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6월: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 <p>4. 민간위탁 소요 예산안(2019년): 324,285천원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분야</th> <th>소 계</th> <th>임대료</th> <th>사무직 인건비</th> <th>운영비</th> <th>배송비</th> <th>안전성 검사비 등</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시비</td> <td>213,392,406</td> <td>11,250,000</td> <td>40,751,841</td> <td>58,891,250</td> <td>71,800,865</td> <td>30,698,450</td> <td></td> </tr> <tr> <td>구비</td> <td>110,893,091</td> <td>11,250,000</td> <td>40,751,841</td> <td>58,891,25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5.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제고 ○ 수요자 요구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 	분야	소 계	임대료	사무직 인건비	운영비	배송비	안전성 검사비 등	비 고	시비	213,392,406	11,250,000	40,751,841	58,891,250	71,800,865	30,698,450		구비	110,893,091	11,250,000	40,751,841	58,891,250			
분야	소 계	임대료	사무직 인건비	운영비	배송비	안전성 검사비 등	비 고																																										
시비	387,844,466	25,000,000	82,859,655	74,855,000	145,990,811	59,139,000																																											
구비	182,714,655	25,000,000	82,859,655	74,855,000																																													
분야	소 계	임대료	사무직 인건비	운영비	배송비	안전성 검사비 등	비 고																																										
시비	213,392,406	11,250,000	40,751,841	58,891,250	71,800,865	30,698,450																																											
구비	110,893,091	11,250,000	40,751,841	58,891,250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54 호
----------	--------

제출연월일 : 2018.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민간위탁 목적

○ 어린이집 등에 건강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 식재료에 대한 전문 지식 및 물류·배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활용하여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가 수요자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
 -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운영
 -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민간위탁 추진 일정 및 향후계획

- 2018. 9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18. 10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18. 11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2018. 11월: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
- 2019. 1월: 일상감사 의뢰
- 2019. 1월: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

- 2019. 2월: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2월: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

4. 민간위탁 소요 예산안(2019년): 570,560천원

분야	소 계	임대료	사무직 인건비	운영비	배송비	안전성 검사비 등	비고
시비	387,844,466	25,000,000	82,859,655	74,855,000	145,990,811	59,139,000	
구비	182,714,655	25,000,000	82,859,655	74,855,000			

※ 예산은 서울시 지원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제고
- 수요자 요구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
- 민간위탁 운영시 인건비 및 제수당 등 비용절감

▶ '18년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현황

- 민간위탁: 강동, 도봉·성북·노원·강북, 서대문, 금천
- 사업추진: '17년 참여 자치구 중 동작('18년중) 중랑, 은평, 송파('1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

6.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
 - ①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